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865

발의연월일: 2022. 10. 19.

발 의 자:정우택·강기윤·강대식

권명호 · 김영식 · 배준영

송석준 · 양금희 · 유경준

이종배 • 이주환 • 조경태

조은희 • 최승재 • 최재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숙사용 부동산과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고, 동등한 학력·학위 등 정규교육과정이 인정될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함에도 그 설립 근거가「평생교육법」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을 감면받고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물론,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공대학에 대하여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아울러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44조 및 제177조의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 ③ 전공대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

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 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제177조의2제1항제2호 중 "제6항까지"를 "제6항까지, 제44조제2항·제 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이하 이 항에서 "전공대학"이 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 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전공대학에 직접 사용하 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를 면제하다.

제44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로서 「평생교육법」 제31조제 4항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이하 이 조에서 "전공대학"이 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 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 제한다.

- 1. 전공대학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
 - 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u>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u> 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

 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

 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

 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2. 전공대학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 다)에 대한 재산세(「지방세 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 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 역자원시설세. 다만, 수익사업 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 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 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 산에 대해서는 면제되지 아니 한다.
- 3. 전공대학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전공대학에 대한 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

<신 설>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 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③ 전공대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한국사학진흥 재단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기숙사로 한 정한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 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 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 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 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각각 2024년 12월 31 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 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 <신 설>

③ • ④ (생 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

- 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 니하는 경우
-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 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 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④ 전공대학의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과세기준일 현재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 <u>⑤</u>· <u>⑥</u> (현행 제3항 및 제4항 과 같음)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 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 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 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 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4조제1항, 제76조제2

<u>.</u>
1. (현행과 같음)
·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	
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	
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